

# SETEC 운영규정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5.11.11 제정 2005.12.12 개정 2006.09.06 개정 2006.12.11 개정 2007.01.03 개정 2009.01.30 개정 2010.06.25 개정 2010.09.28 개정 2010.12.24 개정 2012.01.01 개정 2015.08.01 개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칙 제1절 통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무역전시장(이하 "SETEC"이라 한다)을 "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" 및 "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"에 의거 수출증대 및 중소기업 지원 전문전시장으로서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5.11.11 제정 2005.12.12 개정 2006.09.06 개정 2006.12.11 개정 2007.01.03 개정 2009.01.30 개정 2010.06.25 개정 2010.09.28 개정 2010.12.24 개정 2012.01.01 개정 2015.08.01 개정 <b>2018.02.00 개정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칙 제1절 통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산업진흥원(이하"진흥원"이라 한다)이 『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』 및 『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무역전시장(이하 "SETEC"이라 한다)을 수출증대 및 중소기업 지원 전문전시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 및 사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리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"전시장"이라 함은 전시주최자가 다수의 전시참가자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SETEC의 옥내전시장과 옥외전시장을 말한다.</li> <li>② "옥내전시장"이란 건물 내에 위치한 제 1, 2, 3 전시실을 말한다.</li> <li>③ "옥외전시장"이란 건축구조물 외부 일정구획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.</li> <li>④ "전시주최자" 또는 "사용자"라 함은 전시회를 조직, 운영하는 전시장 임차인을 말한다.</li> <li>⑤ "전시참가자"라 함은 전시주최자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⑥ "관람객"이라 함은 전시회 관람을 위하여 전시장을 내방하는 입장객을 말한다.</li> <li>⑦ 전시장의 영문 명칭은"SEOUL TRADE EXHIBITION &amp; CONVENTION"이며 약칭은"SETEC"이라 한다.</li> </ol>	<p>제2조(용어의 정리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"전시장"이라 함은 전시주최자가 다수의 전시참가자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SETEC의 옥내전시장과 옥외전시장을 말한다.</li> <li>② "옥내전시장"이란 건물 내에 위치한 제 1, 2, 3 전시실을 말한다.</li> <li>③ "옥외전시장"이란 전시 개최를 위해 건축구조물 외부 일정구획 내에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.</li> <li>④ "전시주최자" 또는 "사용자"라 함은 전시회를 조직, 운영하는 전시장 임차인을 말한다.</li> <li>⑤ "전시참가자"라 함은 전시주최자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⑥ "관람객"이라 함은 전시회 관람을 위하여 전시장을 내방하는 입장객을 말한다.</li> <li>⑦ 전시장의 영문 명칭은"SEOUL TRADE EXHIBITION &amp; CONVENTION"이며 약칭은"SETEC"이라 한다.</li> </ol> <p><b>제2조의 2(적용범위)</b> SETEC 처리부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'진흥원'내에 설치된 'SETEC' 운영부서</p>

현행	개정안
	로 하고 처리기간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'SETEC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'기간 동안으로 한다. 이 외의 처리과정, 처리기준, 구비서류는 각 조에 명시한다.
<p>제2절 전시장 사용목적</p> <p>제3조(사용목적) 전시장은 다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, 문화공연 이벤트 행사</li> <li>② 기타 서울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</li> </ol>	<p>제2절 전시장 사용목적</p> <p>제3조(사용목적) 전시장은 다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, 문화공연 이벤트 행사</li> <li>②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</li> </ol>
<p>제3절 사용조건 및 책임한계</p> <p>제4조(사용조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SETEC 전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시설 안내자료, 운영규정 등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SETEC 전시장 사용 신청서(별지 제17호 서식) 등 SETEC 이용과 관련된 사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② 사용자는 서울산업진흥원과의 계약 및 임대료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, 전시장의 사용 목적에 따른 시설 및 장치는 물론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</li> <li>③ 사용자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현장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</li> </ol>	<p>제3절 사용조건 및 책임한계</p> <p>제4조(사용조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동안 전시장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</li> <li>② 사용자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전시장 안전운전을 위한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li> <li>③ 사용자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시설 안내자료를 숙지하고, 전시장 사용 신청서를(별지 제15호 서식)제출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며, 계약 및 임대료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/ol>
<p>제5조(운영규정 위반시 조치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은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li> <li>② 제1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산업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</li> <li>③ 제1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의 시정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은 전시장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전력공급 차단 등 각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</li> <li>④ 서울산업진흥원이 제3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써 서울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, 서울산업진흥원이 입은 손해(철거비용, 운영 및 관리 지연에 따른 손실 등)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.</li> </ol>	<p>제5조(운영규정 위반시 조치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진흥원은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li> <li>② 제1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</li> <li>③ 제1항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불응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할 경우 진흥원은 전시장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전시지원업무(전력공급 차단 등)를 중단할 수 있다.</li> <li>④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제반 손실에 대해 사용자는 진흥원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,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(철거비용, 운영 및 관리 지연에 따른 손실 등)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.</li> </ol>
<p>제6조(전시물품 및 전시장 관리의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시물품의 유지 및 관리의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</li> <li>② 전시물품 등의 도난, 파손, 화재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</li> <li>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장 또는 관람객을 포함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.</li> </ol>	<p>제6조(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시물품의 유지 및 관리의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</li> <li>② 전시물품 등의 도난, 파손, 화재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</li> <li>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장 또는 관람객을 포함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.</li> <li>④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전시참가자, 관람객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li> <li>⑤ 제3항에 따른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진흥원은 차년도 전시 배정시 사용자에게 대해 감점 처리를 할 수 있으며, 지정협력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항에 해당하는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진흥원과 지정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</li> </ol>
제7조(면책)	제7조(불가항력 및 면책)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① 천재지변, 전쟁 등의 재앙과 국가시책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② 전시장에서 발생한 화재, 도난, 파손 등 기타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등의 재해에 대하여 SETEC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① 천재지변, 전쟁 등의 재앙, <b>국가시책 변경</b>, 지자체의 정책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시장 운영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② 전시장에서 발생한 화재, 도난, 파손 등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<b>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</b>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 사용 및 개장시간</p> <p>제8조(사용 및 개장 시간)</p> <p>① 전시장 사용기간 중 사용시간은 임차인이 기본사용시간(08:00 ~ 21:00)내에서 결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정한 사용시간 이외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전시주최자는 시간외 사용신청서(별지 서식 제6호)를 작성하여 해당일 17:00까지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의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전시주최자는 시간당 1일 임대료의 1/13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지불해야 하며 시간의 사용료는 전시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시 합산한다.</p> <p>④ 서울산업진흥원은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사용기간 중 발생한 초과시간에 대해 설치기간과 사용 전시관별로 다음에 정한 무료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15시간까지 시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3 671 1021 804"> <thead> <tr> <th>설치 및 철거기간</th> <th>1관</th> <th>1관+2관(=2관+3관)</th> <th>1관+2관+3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일</td> <td>기본 2시간</td> <td>기본 4시간</td> <td>기본 6시간</td> </tr> <tr> <td>2일</td> <td>2+1시간</td> <td>4+2시간</td> <td>6+3시간</td> </tr> <tr> <td>3일</td> <td>2+2시간</td> <td>6+2시간</td> <td>9+3시간</td> </tr> <tr> <td>4일</td> <td>2+3시간</td> <td>8+2시간</td> <td>12+3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⑤ 사용시간의 연장,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경우 서울산업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료주차 이용을 위해서는 주최자용 무료주차권 발급 신청서[별지 제1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전시장 2개관 이상 사용 또는 대형 무대장치(트러스 등), 다수의 독립부스와 목공부스를 설치하는 경우, 반드시 철거기간 1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단, 기본부스이거나 철거 분량이 소규모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	설치 및 철거기간	1관	1관+2관(=2관+3관)	1관+2관+3관	1일	기본 2시간	기본 4시간	기본 6시간	2일	2+1시간	4+2시간	6+3시간	3일	2+2시간	6+2시간	9+3시간	4일	2+3시간	8+2시간	12+3시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 사용 및 개장시간</p> <p>제8조(사용 및 개장 시간)</p> <p>① 전시장 임차기간 중 사용시간은 사용자가 기본사용시간(08:00 ~ 21:00) <b>내에서 결정한다.</b></p> <p>② 제1항에서 정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할 경우 사용자는 시간외 사용신청서(<b>별지 제5호 서식</b>)를 작성하여 해당일 17:00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<b>초과 사용에 따른 시간외 사용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③ 제2항에 <b>다른 시간의 사용료는 시간당 1일 임대료의 1/13</b>이며, 전 전시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시 합산한다.</p> <p>④ 진흥원은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사용기간 중 발생한 초과시간에 대해 설치기간과 사용 전시관별로 다음에 정한 무료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15시간까지 시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43 639 1968 772"> <thead> <tr> <th>설치 및 철거기간</th> <th>1관</th> <th>1관+2관(=2관+3관)</th> <th>1관+2관+3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일</td> <td>기본 2시간</td> <td>기본 4시간</td> <td>기본 6시간</td> </tr> <tr> <td>2일</td> <td>2+1시간</td> <td>4+2시간</td> <td>6+3시간</td> </tr> <tr> <td>3일</td> <td>2+2시간</td> <td>6+2시간</td> <td>9+3시간</td> </tr> <tr> <td>4일</td> <td>2+3시간</td> <td>8+2시간</td> <td>12+3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⑤ 사용시간의 연장,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경우 <b>진흥원</b>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<b>진흥원</b>에서 제공하는 무료주차 이용을 위해서는 주최자용 <b>무료주차권 발급신청서[별지 제12호 서식]</b>를 작성하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전시장 2개관 이상 사용 또는 대형 무대장치(트러스 등), 다수의 독립부스와 목공부스를 설치하는 경우, 반드시 철거기간 1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단, 기본부스이거나 철거 분량이 소규모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⑧ <b>진흥원은 사용자에게 임대기간 동안 주최자 사무실, 매표소, 프레스 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사용자는 상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하여 반납한다.</b></p>	설치 및 철거기간	1관	1관+2관(=2관+3관)	1관+2관+3관	1일	기본 2시간	기본 4시간	기본 6시간	2일	2+1시간	4+2시간	6+3시간	3일	2+2시간	6+2시간	9+3시간	4일	2+3시간	8+2시간	12+3시간
설치 및 철거기간	1관	1관+2관(=2관+3관)	1관+2관+3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일	기본 2시간	기본 4시간	기본 6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일	2+1시간	4+2시간	6+3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일	2+2시간	6+2시간	9+3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일	2+3시간	8+2시간	12+3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치 및 철거기간	1관	1관+2관(=2관+3관)	1관+2관+3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일	기본 2시간	기본 4시간	기본 6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일	2+1시간	4+2시간	6+3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일	2+2시간	6+2시간	9+3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일	2+3시간	8+2시간	12+3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절 전시장 출입</p> <p>제9조(입장료 및 입장권의 판매)</p> <p>① 전시주최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개최하는 전시회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초청장을 발행하거나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의 판매수입은 전시주최자에게 귀속한다.</p> <p>② 서울산업진흥원은 입장권 매표소의 효율적인 관리, 운영을 위하여 매표용역 업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협력 업체를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절 전시장 출입</p> <p>제9조(입장료 및 입장권의 판매)</p> <p>① 전시주최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개최하는 전시회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초청장을 발행하거나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의 판매수입은 전시주최자에게 귀속한다.</p> <p>② <b>진흥원은</b> 입장권 매표소의 효율적인 관리, 운영을 위하여 매표용역업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협력업체를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하여야 한다. <b>단, 전시주최자가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b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0조(전시실내의 출입)</p> <p>① 전시주최자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패용한 SBA 소속 임직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의 전시장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 출입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</p>	<p>제10조(전시장의 출입)</p> <p>① 전시주최자는 <b>진흥원</b>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<b>패용한 진흥원</b> 소속 임직원 및 유관기관(관공서 등) 임직원, 시설관리자 등의 전시장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 출입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<b>진흥원</b>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시주최자는 <b>범죄예방</b>, 소방, 환경, 위생 등의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
<p>② 전시주최자는 방법, 소방, 환경, 위생 등의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이 확인하는 내방인사의 출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	<p>과 진흥원이 확인하는 내방인사의 출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 <b>③ 진흥원은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여, 안전대책 계획서 및 서약서(별지 제18호 서식) 상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수의 관람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객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, 전시주최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절 전시장 배정</p> <p>제11조(배정권한)  전시주최자에 대한 전시장 배정은 서울산업진흥원이 행하며, 전시참가자의 스탠드 및 면적배정은 전시주최자가 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절 전시장 배정</p> <p>제11조(배정권한)  전시주최자가 사용할 전시장 배정은 진흥원이 하며, 전시참가자의 스탠드 및 면적배정은 전시주최자가 한다.</p>
<p>제12조(배정기준)</p> <p>① 서울산업진흥원은 전시장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순위, 규모, 사용실적, 예상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다음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우선하여 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통상진흥 및 산업발전 기반 확충을 위한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</li> <li>2. 서울형 신산업 및 전략산업, 첨단산업 등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</li> <li>3. 외국국가 또는 업체가 참가하는 각종 국제전시회 및 국제 박람회</li> <li>4.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</li> <li>5.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</li> </ol> <p>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과 관련한 전시회 및 행사는 우선배정 할 수 있다.</p> <p>③ 동시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획을 배분하여 배정한다.</p> <p>④ 사회질서의 기준을 위반하는 사행성 조장, 도박, 미풍양속 등을 위해하는 행사 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배정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사 중복전시의 경우 기존전시 개최기간 전후 2개월 이내 일정은 배정할 수 없다. 단, 해당 중복전시주최사간 상호협약이 있는 경우 또는 공실에 따른 배정에는 예외로 한다.</li> <li>2. 사용자가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전시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제12조(배정기준)</p> <p>① 진흥원은 전시장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순위, 규모, 사용실적, 예상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다음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우선하여 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통상진흥 및 산업발전 기반 확충을 위한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</li> <li>2. 서울형 신산업 및 전략산업, 첨단산업 등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</li> <li>3. 외국국가 또는 업체가 참가하는 각종 국제전시회 및 국제 박람회</li> <li>4.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</li> <li>5.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</li> </ol> <p>② <b>제1항</b>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과 관련한 전시회 및 행사는 우선배정 할 수 있다.</p> <p>③ 동시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획을 배분하여 배정한다.</p> <p>④ 사회질서의 기준을 위반하는 사행성 조장, 도박, 불법판매 행사, 비도덕적이거나 미풍양속 등을 위해하는 행사, 전시장의 시설로 수용하기 어려운 행사, 서울시 및 진흥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안전 관리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배정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사 중복전시의 경우 기존전시 개최기간 전후 2개월 이내 일정은 배정할 수 없고, <b>동일 주최사의 동종 전시회의 경우 연 4회 이상 배정하지 않는다.</b> 단, 해당 중복전시주최사간 상호협약이 있는 경우 또는 공실에 따른 배정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</li> <li>2. 사용자가 진흥원과 협의 없이 전시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경우 또는 <b>전시장 안전대책 계획 미준수자는 전시장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b></li> </ol> <p>⑤ <b>이외에 주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정한다.</b></p>
<p>제13조(양도금지)</p> <p>제11조에 의해 전시면적을 배정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참가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단 사전에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	<p>제13조(양도금지)</p> <p>제11조에 의해 전시면적을 배정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참가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단 사전에 <b>진흥원</b>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계약 및 요금 제1절 임대신청, 계약 및 해약</p> <p>제14조(임대신청)</p> <p>① SETEC 전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1,2,3,4, 6, 7호의 서류를 구비 또는 작성하여 반드시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SETEC 전시장 사용신청서[별지 제15호 서식]</li> <li>2. SETEC 전시장 사용동의서[별지 제16호 서식]</li> <li>3.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4. 전시 기획서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계약 및 요금 제1절 임대신청, 계약 및 해약</p> <p>제14조(임대신청)</p> <p>① SETEC 전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또는 작성하여 반드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SETEC 전시장 사용신청서[별지 제15호 서식]</li> <li>2. SETEC 전시장 사용동의서[별지 제16호 서식]</li> <li>3.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4. 전시 기획서</li> </ol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5. 신용카드정보제공 및 사용동의서[별지 제17호 서식] 6. 전시주최자 안전대책 계획서 (신설) 7. 전시주최자 안전대책 서약서[별지 제18호 서식] (신설) ② 전시장 사용료 결재를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(법인)의 신용카드 정보를 오픈하는데 동의하고 상기 5호 서식[별지 제19호 서식]을 작성하여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5. 신용카드정보제공 및 사용동의서[별지 제17호 서식] 6. 전시주최자 안전대책 계획서 및 서약서 [별지 제18호 서식]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5조(계약체결) ① 사용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임대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“SETEC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”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서울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 ② 사용자가 SETEC 옥외 전시장 및 옥내 로비공간에 현장 등록데스크 이외의 전시 또는 홍보부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설치도면과 사용면적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고 서울산업진흥원과 사용계약 체결 후 이용할 수 있다. ③ 사용자가 계약금 입금시 계약 체결로 인정한다.</p>	<p>제15조(계약체결) ① 사용자는 임대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“SETEC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”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단, <b>진흥원</b>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 ② 사용자가 SETEC 옥내 로비공간을 현장 등록데스크 이외의 전시 또는 홍보부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설치도면과 사용면적을 <b>진흥원</b>에 제출하고 <b>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할 수 있다.</b> ③ 사용자가 계약금 입금시 계약 체결로 인정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6조(임대차보증금) ①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개시일 전 다음에 정한 비율의 임대차보증금을 현금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36 654 1008 774"> <thead> <tr> <th>납입시기</th> <th>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약 체결시</td> <td>임차료의 20%</td> </tr> <tr> <td>사용개시 6개월전</td> <td>임차료의 30%</td> </tr> <tr> <td>사용개시 7일전</td> <td>임차료의 50%, 관리비에치금 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제①항의 임대차보증금은 전시장 사용 종료시 임대차료로 대체 정산한다. ③ 제①항의 임대차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. ④ 임대차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배정 통보내역은 무효하며 배정일정은 자동 취소 될 수 있다. ⑤ 제④ 항의 임대차보증금 납입 지체 후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체일로부터 납부완료일까지 18%의 지체상금을 가산, 납부하여야 한다. ⑥ 임대차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, 신용카드정보제공 및 사용동의서(별지 제 17호 서식)를 작성하여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, ⑦ 서울산업진흥원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한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항의 임대차보증금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.</p>	납입시기	비율	계약 체결시	임차료의 20%	사용개시 6개월전	임차료의 30%	사용개시 7일전	임차료의 50%, 관리비에치금 100%	<p>제16조(임대차보증금) ①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개시일 전까지 다음에 정한 비율의 임대차보증금을 현금 또는 <b>신용카드로 결제</b>하여야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81 686 1953 805"> <thead> <tr> <th>납입시기</th> <th>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약 체결시</td> <td>임차료의 20%</td> </tr> <tr> <td>사용개시 6개월전</td> <td>임차료의 30%</td> </tr> <tr> <td>사용개시 7일전</td> <td>임차료의 50%, 관리비에치금 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<b>제1항의</b> 임대차보증금은 전시장 사용 종료후 임대차료로 대체 정산한다. ③ <b>제1항의</b> 임대차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. ④ 임대차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배정 통보내역은 <b>무효이며, 배정일정은 자동 취소 될 수 있다. 단, 지체일로부터 납부완료일까지 연이율 18%의 지체상금을 가산하며, 납부할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.</b> ⑤ <b>임대차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</b>하고자 하는 사용자는, 신용카드정보제공 및 사용동의서(별지 제17호 서식)를 작성하여 <b>진흥원</b>에 제출하여야 <b>한다.</b> ⑥ <b>진흥원</b>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한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<b>제1항의 임대차보증금</b>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.</p>	납입시기	비율	계약 체결시	임차료의 20%	사용개시 6개월전	임차료의 30%	사용개시 7일전	임차료의 50%, 관리비에치금 100%								
납입시기	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
계약 체결시	임차료의 20%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개시 6개월전	임차료의 30%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개시 7일전	임차료의 50%, 관리비에치금 100%																								
납입시기	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
계약 체결시	임차료의 20%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개시 6개월전	임차료의 30%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개시 7일전	임차료의 50%, 관리비에치금 100%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7조(계약변경 및 위약금, 계약해지) ① 전시장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사용자가 계약된 전시장의 일부 (50% 미만)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제16조 제④항, 제17조 제④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지불하여야하며 기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이 있을 경우, 동 보증금에서 차감한다. 단, 위약금은 기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36 1260 1008 1428"> <thead> <tr> <th>취소시기</th> <th>위약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7일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100%</td> </tr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 7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80%</td> </tr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4개월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70%</td> </tr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일 4개월 전일부터 5개월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60%</td> </tr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일 5개월 전일부터 12개월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5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득하고 임대차료 총액의 5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</p>	취소시기	위약금	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7일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100%	임대차기간 개시 7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80%	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4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70%	임대차기간 개시일 4개월 전일부터 5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60%	임대차기간 개시일 5개월 전일부터 12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50%	<p>제17조(계약변경 및 위약금, 계약해지) ① 사용자가 전시장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시장의 <b>일부(50% 미만)</b>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제16조 <b>제4항</b>, 제17조 <b>제4항</b>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, 사용자는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<b>진흥원</b>에 지불하여야하며 기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이 있을 경우, 동 보증금에서 차감한다. 단, 위약금은 기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81 1260 1953 1428"> <thead> <tr> <th>취소시기</th> <th>위약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7일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100%</td> </tr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 7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80%</td> </tr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4개월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70%</td> </tr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일 4개월 전일부터 5개월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60%</td> </tr> <tr> <td>임대차기간 개시일 5개월 전일부터 12개월까지</td> <td>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5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<b>진흥원</b>의 승인을 득하고 임대차료 총액의 5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 단 기간</p>	취소시기	위약금	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7일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100%	임대차기간 개시 7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80%	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4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70%	임대차기간 개시일 4개월 전일부터 5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60%	임대차기간 개시일 5개월 전일부터 12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50%
취소시기	위약금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7일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100%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 7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80%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4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70%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일 4개월 전일부터 5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60%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일 5개월 전일부터 12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50%																								
취소시기	위약금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7일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100%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 7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80%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4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70%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일 4개월 전일부터 5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60%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기간 개시일 5개월 전일부터 12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 임차료× 50%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
<p>단 기간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 당해연도에 한한다.</p> <p>③ 제②항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을 납입하는 즉시 서울산업진흥원과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계약면적의 50% 이상을 취소하는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</p> <p>⑤ 임대차 계약해지의사 접수일자는 해지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로 한다.</p> <p>⑥ 천재지변, 재앙, 국가시책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기 납입임대차료 전액을 반환한다.</p> <p>⑦ 전시장 사용 개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임대차료의 100%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며 계약자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임대차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</p> <p>⑧ 서울산업진흥원은 제16조 제④항, 제17조 제④항 외에 다음 각호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시주최자가 임대(차)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2. 전시주최자가 일방적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는 등 계약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li> <li>3. 전시주최자 또는 전시주최자가 지정한 협력업체가 운영규정 및 요령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1차, 2차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</li> <li>4. 전시주최자의 채무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</li> <li>5. 임대료 납입기한을 주최자가 임의로 지속 지연하는 경우</li> </ol>	<p>변경은 계약이 체결된 당해연도에 한한다.</p> <p>③ <b>제2항의 변경사항</b>이 발생되었을 경우, 해당 <b>위약금</b>을 납입하는 즉시 <b>진흥원과 변경계약</b>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계약면적의 50% 이상을 취소하는 경우 <b>진흥원</b>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</p> <p>⑤ 사용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, 해지일자는 해지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로 한다.</p> <p>⑥ 천재지변, 재앙, 국가시책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<b>진흥원은</b> 기 납입임대차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.</p> <p>⑦ 전시장 사용 개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<b>해지할</b> 경우, 임대차료의 100%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며 사용자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임대차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</p> <p>⑧ <b>진흥원</b>은 제16조 <b>제4항</b>, 제17조 <b>제4항</b> 외에 <b>다음 각 호에</b>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사용자가 임대차</b>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2. <b>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의사</b>를 표시하는 등 계약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li> <li>3.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협력업체가 운영규정 및 요령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</li> <li>4. <b>사용자의</b> 채무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</li> <li>5. 임대료 납입기한을 <b>전시주최자가</b> 임의로 지속 지연하는 경우</li> </o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임대차료</p> <p>제18조(임대차료)</p> <p>① SETEC 전시장 임대차료는 SETEC 전시장 임대요금표(별표 제1호)와 같이 정한다.</p> <p>② 임대차기간은 전시장 개장을 위하여 시설, 장치 및 전시 등이 시작되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전시장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확인받는 날까지로 한다.</p> <p>③ 서울산업진흥원은 효율적인 전시회 유치 등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단 이 경우에도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시 및 SBA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 전시.박람회 등 임대료 100% 감면</li> <li>2. 서울시 및 SBA가 후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전시.박람회 등 임대료 50% 이내 감면</li> <li>3.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공익형 행사 등에 대해 서울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0% 감면 단 3,4,5,10,11월에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50% 감면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임대차료</p> <p>제18조(임대차료)</p> <p>① 전시장 임대차료는 전시장 임대요금표(별표 제1호)와 같이 정한다.</p> <p>② 임대차기간은 전시장 개장을 위하여 시설, 장치 및 전시 등이 시작되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전시장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<b>진흥원이</b> 확인한 날까지로 한다.</p> <p>③ <b>진흥원</b>은 효율적인 전시회 유치 등을 위해 <b>다음 각 호에</b>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단 이 경우에도 관리비는 별도로 <b>부과한다.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시 또는 <b>진흥원이 주최/주관</b>하는 중소기업 지원 전시.박람회 등 임대료 100% 감면</li> <li>2. 서울시 또는 <b>진흥원이</b> 후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전시.박람회 등 임대료 50% 이내 감면</li> <li>3. <b>서울시에서 요청</b>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공익형 <b>행사 100% 감면</b> (단 3,4,5,10,11월에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50% 감면)</li> <li>4. <b>서울시를 제외한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/주관</b>하는 공공행사,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일자리 관련 전시회 임대료 10% 감면</li> </ol> <p>④ <b>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, 서울시 운영부서의 승인에 따라 임대료의 50~100%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절 관리비</p> <p>제19조(관리비 및 제사용료)</p> <p>사용자가 부담할 관리비는 기본관리비, 전기, 상·하수도료, 압축공기사용료, 냉·난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등을 말하며 SETEC 전시장 관리비 및 제사용료(별표 제2호)와 같이 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절 관리비</p> <p>제19조(관리비 및 제사용료)</p> <p>사용자가 부담할 관리비는 기본관리비, 전기, 상·하수도료, 압축공기사용료, 냉·난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등을 말하며 SETEC 전시장 관리비 및 제사용료(별표 제2호)와 같이 정한다.</p>
<p>제20조(관리비 등의 예치)</p>	<p>제20조(관리비 등의 예치)</p>

현행	개정안
<p>① 전시주최자는 다음의 관리비 예치금을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서울산업진흥원에 예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대차료의 55%(부가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</li> <li>이 경우 기준이 되는 임대차료는 월별, 규모별, 할인율, 분할사용 할증료 등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시회의 성격에 따라 예치금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은 추가로 예치토록 할 수 있다.</li> </ol> <p>② 관리비 등의 예치금은 전시장 사용 종료시 관리비, 원상복구비 및 시간외 사용료 등의 부족 금액으로 대체 정산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부족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부과 통지에 따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관리비 예치금은 무이자로 한다.</p>	<p>① 전시주최자는 다음의 관리비 예치금을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진흥원에 예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대차료의 55%(부가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</li> <li>이 경우 기준이 되는 임대차료는 월별, 규모별, 할인율, 분할사용 할증료 등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시회의 성격에 따라 예치금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<b>진흥원</b>은 추가로 예치토록 할 수 있다.</li> </ol> <p>② 관리비 등의 예치금은 전시장 사용 종료시 관리비, 원상복구비 및 시간외 사용료 등의 부족 금액으로 대체 정산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부족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<b>진흥원</b>의 부과 통지에 따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관리비 예치금은 무이자로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전시장 시설운영 제1절 지정협력업체</p> <p>제21조(지정협력업체)</p> <p>① 서울산업진흥원은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협력업체를 지정,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협력업체 수는 필요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시장치업체</li> <li>전기시설업체</li> <li>가구 및 비품임대업체</li> <li>카페트 및 파이텍스 설치업체</li> <li>Air / 급배수 설치업체</li> <li>운수 / 통관 업체</li> <li>경비·청소업체</li> <li>통신업체</li> <li>광고안내업체</li> <li>기타 SETEC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협력업체</li> </ol> <p>② 사용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업종 용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, 지정협력업체 이외의 협력업체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서울산업진흥원은 전시장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지정, 운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당 및 스낵코너</li> <li>매점, 자동판매기</li> <li>기타 서울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련 시설 및 분야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전시장 시설운영 제1절 지정협력업체</p> <p>제21조(지정협력업체)</p> <p>① <b>진흥원</b>은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b>다음 각 호의</b> 협력업체를 지정,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협력업체 수는 필요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시장치업체</li> <li>전기시설업체</li> <li>가구 및 비품임대업체</li> <li>카페트 및 파이텍스 설치업체</li> <li>Air / 급배수 설치업체</li> <li>운수 / 통관 업체</li> <li>경비·청소업체</li> <li>통신업체</li> <li>광고안내업체</li> <li>기타 SETEC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협력업체</li> </ol> <p>② 사용자는 제1항 <b>각 호의</b> 해당업종 용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, 지정협력업체 이외의 협력업체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<b>진흥원의</b>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<b>진흥원</b>은 전시장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<b>다음 각 호의</b> 편의시설을 지정, 운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당 및 스낵코너</li> <li>매점, 자동판매기</li> <li>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련 시설 및 분야</li> </o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관리시설물 설치</p> <p>제22조(전기·수도·압축공기시설)</p> <p>① 전시품 작동 및 국부조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사, 급·배수시설 및 압축공기 배관공사는 서울산업진흥원의 감독 하에 사용자가 전시장내 해당 공급기에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관리시설물 설치</p> <p>제22조(전기·수도·압축공기시설)</p> <p>① 전시품 작동 및 국부조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사, 급·배수시설 및 압축공기 배관공사는 <b>진흥원</b>의 감독 하에 사용자가 전시장내 해당 공급기에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/p>
<p>제23조(전화시설)</p> <p>전시시스템용 전화는 한국통신(KT)이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</p>	<p>제23조(전화시설)</p> <p>전시시스템용 전화는 한국통신(KT)이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</p>

현 행	개 정 안
으로 한다.	으로 한다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절 전시스템 설계 및 장치공사</p> <p>제24조(설계도 제출)  사용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시스템 설치(변경)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및 기술지원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와 함께 전체평면도(축적 1/200), 전시스템별 평면도 및 입면도(축적 1/20)를 SETEC에 제출하여야 하며, 서울산업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절 전시스템 설계 및 장치공사</p> <p>제24조(설계도 제출)  사용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시스템 설치(변경)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및 기술지원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와 함께 전체평면도(축적 1/200), 전시스템별 평면도 및 입면도(축적 1/20)를 <b>진흥원에</b> 제출하여야 하며, <b>진흥원</b>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
<p>제25조(설치공사의 승인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서울산업진흥원은 제출된 설계도를 검토, 설치 시설물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설치를 승인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</li> <li>②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시설물 설계 변경을 요청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는 변경된 설계도를 첨부한 전시스템 설치(변경)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③ 전시주최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기 설비도면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④ 제1, 2, 3항에 대하여 설계도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이나 조건부 승인한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이나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변경 없이 그대로 시공하였을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전력공급 등 제반 지원사항을 중단할 수 있다.</li> <li>⑤ 상기 사항에 대한 문제발생시 사용자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책임 부분을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</li> </ol>	<p>제25조(설치공사의 승인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<b>진흥원</b>은 전시주최사가 제출한 설계도를 검토하고, 설치 시설물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설치를 승인하거나 사용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</li> <li>② <b>진흥원이 설계 변경을 요청하거나, 전시주최사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</b> 전시주최자는 변경된 설계도를 첨부한 전시스템 설치(변경)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<b>진흥원</b>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③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시주최사는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기 설비도면을 <b>진흥원</b>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④ <b>진흥원이 전시주최사가 제출한</b> 제1, 2, 3항에 대하여 설계도를 검토하여 <b>설계변경을 요청했거나 조건부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</b>, 시공업체가 설계변경 요청사항이나 조건부 승인내용에 대하여 변경 없이 그대로 시공하였을 경우, <b>진흥원</b>은 해당 시공업체에 대하여 지정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사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등 제반 지원사항을 중단할 수 있다.</li> <li>⑤ 제4항에 따른 문제 발생시, 사용자는 <b>진흥원</b>과 책임 부분을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</li> </ol>
<p>제26조(작업신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명의의 작업 신고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② 제8조 제2항의 전시장 사용시간외 추가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시간외 사용신청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③ 모든 작업원은 SETEC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서울산업진흥원이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.</li> </ol>	<p>제26조(작업신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명의의 <b>작업신고서</b>(별지 제4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② 제8조 제2항의 전시장의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시간외 <b>사용신청서</b>(별지 제5호 서식)를 <b>진흥원</b>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li> <li>③ 모든 작업원은 <b>진흥원</b>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<b>진흥원</b>이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.</li> </ol>
<p>제27조(작업일정)</p> <p>사용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작업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7조(작업일정)</p> <p>사용자는 <b>진흥원</b>의 승인을 받은 작업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
<p>제28조(천정 및 시설물의 높이 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천정에는 전시 및 선전광고용 물체 등을 설치할 수 없다. 다만 배너 등 경량물체인 때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.</li> <li>② 전시시설물 및 전시물은 그 특성에 따라 전시바닥으로부터 5~6m를 초과하여 설치 또는 장치할 수 없다.</li> <li>③ 사용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활한 조치를 위한 비상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</li> <li>④ 사용자는 화재발생시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전시시설물 및 스탠드는 복층으로 설치할 수 없다.</li> </ol>	<p>제28조(천정 및 시설물의 높이 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천정에는 전시 및 선전광고용 물체 등을 설치할 수 없다. 다만 배너 등 경량물체인 <b>경우는 진흥원</b>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.</li> <li>② 전시시설물 및 전시물은 그 특성에 따라 전시바닥으로부터 5m를 초과하여 설치 또는 장치할 수 없다.</li> <li>③ 사용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활한 조치를 위한 비상통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.</li> <li>④ 사용자는 화재발생시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전시시설물 및 스탠드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없다.</li> </ol>
<p>제29조(시설물 설치시 유의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시스템드간 통로폭은 반드시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li> <li>② 통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.</li> <li>③ 통로에는 긴급피난시 방해가 되는 설비 또는 전시품을 설치 또는 방치 할 수 없다.</li> </ol>	<p>제29조(시설물 설치시 유의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시스템드간 통로폭은 반드시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li> <li>② 통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.</li> <li>③ 통로에는 긴급피난시 방해가 되는 설비 또는 전시품을 설치 또는 방치 할 수 없다.</li> </ol>



현 행	개 정 안
<p>④ 비상구, 기계실·창고출입구, 소화전설비, 화장실 입구부분에는 전시스탠드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.</p> <p>⑤ 전시스탠드는 기존 시설물 벽면이나 이동식 칸막이 PANEL에서 50cm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하며, 기존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고, 전시장 도면에 제시된 구획 범위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어떠한 경우에도 전시장 바닥에 천공이나 못 등을 이용하여 전시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.</p>	<p>④ 비상구, 기계실·창고출입구, 소화전설비, 화장실 입구부분에는 전시스탠드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.</p> <p>⑤ 전시스탠드는 기존 시설물 벽면이나 이동식 칸막이 PANEL에서 50cm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하며, 기존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고, 전시장 도면에 제시된 구획 범위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어떠한 경우에도 전시장 바닥에 천공이나 못 등을 이용하여 전시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.</p>
<p>제30조(사용자재) 전시스탠드 및 바닥마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방염처리 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</p>	<p>제30조(사용자재) 전시스탠드 및 바닥마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방염처리 자재 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</p>
<p>제31조(광고안내 시설물 등의 설치) 사용자가 전시회 등 행사홍보를 위하여 아치, 현수막, 안내입간판 등의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 안내 시설물 설치(변경) 신고서(별지 제6호 서식) 및 배치도, 설계도를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, 사전에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31조(광고안내 시설물 등의 설치) 사용자가 전시회 등 행사홍보를 위하여 아치, 현수막, 안내입간판 등의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<b>광고안내 시설물</b> 설치(변경) 신고서(별지 제6호 서식) 및 배치도, 설계도를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하고 사전에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 제 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 제 한</p>
<p>제32조(전기시설 규제사항) 사용자는 전기공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부전력은 1m<sup>2</sup>당 100W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2. 배선공사는 600Volts EV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, IV전선이나 PVC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.</li> <li>3. 주 전원스위치는 노후즈 브레이커(NO FUSE BREAKER)를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4. 전원연결 콘센트는 전시장 바닥에서 3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5. 전시품 작동용 전력과 국부 조명용 전원의 스위치는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6. 전시품 작동용 모터 및 기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.</li> <li>7. 전기시설공사는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, 시공되어야 한다.</li> <li>8. 전기 사용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실시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제32조(전기시설 규제사항) 사용자는 전기공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부전력은 1m<sup>2</sup>당 100W를 초과할 수 없다.</li> <li>2. 배선공사는 600Volts EV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, IV전선이나 PVC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.</li> <li>3. 주 전원스위치는 노후즈 브레이커(NO FUSE BREAKER)를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4. 전원연결 콘센트는 전시장 바닥에서 3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5. 전시품 작동용 전력과 국부 조명용 전원의 스위치는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6. 전시품 작동용 모터 및 기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.</li> <li>7. 전기시설공사는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, 시공되어야 한다.</li> <li>8. 전기 사용은 진흥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실시할 수 있다.</li> </ol>
<p>제33조(중량전시품의 전시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옥내전시장에 진열되는 전시품의 하중은 2톤/m<sup>2</sup>를 초과하지 못한다.</li> <li>② 중량물의 반입 시에는 중량물 반입 신고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, 반입, 반출, 설치 시에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li> <li>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력공급 등 지원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및 전시참가자에게 있다.</li> </ol>	<p>제33조(중량전시품의 전시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옥내전시장에 진열되는 전시품의 하중은 2톤/m<sup>2</sup>를 초과하지 못한다.</li> <li>② 중량물의 반입 시에는 중량물 반입 신고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, 반입, 반출, 설치 시에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li> <li>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력공급 등 지원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및 전시참가자에게 있다.</li> </ol>
<p>제34조(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위험물을 전시장에 반입 또는 반출코자 할 때에는 위험물 반출입 허가신청서(별지 제8호 서식)를 제출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을 받은 물품 및 수량 이외의 위험물은 전시장내에 반입할 수 없다.</li> <li>②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방법령,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.</li> <li>③ 전시장내에서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.</li> <li>④ 위험물의 취급 및 보관은 서울산업진흥원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li> <li>⑤ 위험물의 반입,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</li> </ol>	<p>제34조(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위험물을 전시장에 반입 또는 <b>반출하고자 할</b> 때에는 위험물 <b>반입(반출)</b> 허가신청서(별지 제8호 서식)를 제출하고 <b>진흥원</b>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을 받은 물품 및 수량 이외의 위험물은 전시장내에 반입할 수 없다.</li> <li>②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방법령,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.</li> <li>③ 전시장내에서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.</li> <li>④ 위험물의 취급 및 보관은 진흥원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li> <li>⑤ 위험물의 반입,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</li> </ol>
<p>제35조(전기기기의 사용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/ol>	<p>제35조(전기기기의 사용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<b>다음 각 호의</b>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1. 전시장 내에서는 콤프레셔, 전기톱, 전기대패, 전기그라인더 등 전기작업공구의 사용을 금한다. 단, 전시장내 콤프레셔는 단상 2kw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, 단상 2kw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전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2. 보일러, 용광로, 스토브 등 위험성이 높은 전시품은 작동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1항 각호에 정한 작업공구의 사용 및 전시품의 작동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서울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1. 전시장 내에서는 콤프레셔, 전기톱, 전기대패, 전기그라인더 등 전기작업공구의 사용을 금한다. 단, 전시장내 콤프레셔는 단상 2kw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, 단상 2kw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전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2. 보일러, 용광로, 스토브 등 위험성이 높은 전시품은 작동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
<p>제36조(전열기구의 사용제한)</p> <p>① 전열기구 작동시 표면온도가 70°C 이상일 때에는 안전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시 작동용 전열기구는 목재로 된 진열대 위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30cm이상 높이의 불연성 진열대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기취사구, 다리미등 전열기용 제품과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전열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전시스템에는 카페트나 파이텍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.</p>	<p>제36조(전열기구의 사용제한)</p> <p>① 전열기구 작동시 표면온도가 70°C 이상일 때에는 안전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시 작동용 전열기구는 목재로 된 진열대 위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30cm이상 높이의 불연성 진열대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기취사구, <b>다리미 등</b> 전열기용 제품과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전열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전시스템에는 카페트나 파이텍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.</p>
<p>제37조(흡연금지) 전시장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한다.</p>	<p>제37조(흡연금지) 전시장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한다.</p>
<p>제38조(사용자의 방화관리책임)</p> <p>① 사용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시장 내외의 관리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.</p> <p>②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기간 중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관리자, 방화담당책임자, 화기취급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방화관리 책임자 신청서(별지 제9호 서식)으로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사용자는 소화전, 비상구, 소화기, 전원스위치 등의 위치를 확인하며, 매일 폐문시에는 화원(火源)을 점검, 차단하여야 한다.</p>	<p>제38조(사용자의 방화관리책임)</p> <p>① 사용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시장 내외부의 관리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.</p> <p>②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기간 중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관리자, 방화담당책임자, 화기취급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방화관리 책임자 신청서(별지 제9호 서식)으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사용자는 소화전, 비상구, 소화기, 전원스위치 등의 위치를 확인하며, 매일 폐문시에는 화원(火源)을 점검, 차단하여야 한다.</p>
<p>제39조(옥외 전시장 이벤트 제한)</p> <p>SETEC 야외 전시공간에 애드벌룬 설치, 확성기 사용, 동영상과 음향을 사용하는 이벤트 개최는 금지하여야 한다. ※ 옥외 광고물 등 관련법, 소음진동 규제법 참조</p>	<p>제39조(옥외 전시장 이벤트 제한)</p> <p><b>전시장</b> 야외 전시공간에 애드벌룬 설치, 확성기 사용, 동영상과 음향을 사용하는 이벤트 개최는 금지하여야 한다. ※ 옥외 광고물 등 관련법, 소음진동 규제법 참조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전시운영 제1절 전시장의 운영관리</p> <p>제40조(상주요원 및 경비원)</p> <p>①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기간 중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구매자와의 상담, 보안 및 관람질서 유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기간 중 화재,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경비원을 고용,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항의 상주요원 및 경비원은 전시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, 서울산업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④ 사용자는 전시회 개최 7일전까지 상주요원 및 경비원의 명단(별지 제11호 서식)을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전시운영 제1절 전시장의 운영관리</p> <p>제40조(상주요원 및 경비원)</p> <p>①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기간 중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구매자와의 상담, 보안 및 관람질서 유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기간 중 화재,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경비원을 고용,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b>상주요원</b> 및 경비원은 전시장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, <b>진흥원</b>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④ 사용자는 전시회 개최 7일전까지 상주요원 및 경비원의 명단(별지 제11호 서식)과 <b>안전대책계획서 및 서약서(별지 제18호 서식)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고, 전시장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</b></p>
<p>제41조(음식물의 제공)</p> <p>① 사용자는 전시장 내외에서 음식물의 판매,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</p> <p>② 전시회, 행사 등의 성격상 시식, 시음 등 음식물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산업진흥원에 신고,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</p>	<p>제41조(음식물의 제공)</p> <p>① 사용자는 전시장 내외에서 음식물의 판매,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</p> <p>② 전시회, 행사 등의 성격상 시식, 시음 등 음식물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진흥원에 신고,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</p>
<p>제42조(전시품 반출입, 물품의 판매금지)</p> <p>① 전시주최자는 전시품 반입 또는 반출 2일전에 전시참가자로부터 전시품 반입(반출) 신청서(별지 제10호 서식)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, 서울산업진흥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확인된 전</p>	<p>제42조(전시품 반출입, 물품의 판매금지)</p> <p>① 전시주최자는 전시품 반입 또는 반출 2일전에 전시참가자로부터 전시품 <b>반입(반출)</b> 신청서(별지 제10호 서식)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,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확인된 전시품 반출</p>

현행	개정안
<p>상품 반출입 신청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시장 내외에서의 물품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단, 사용자와 서울산업진흥원에 사전 협의가 되어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	<p>입 신청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시장 내외에서의 물품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단, 사용자와 진흥원에 사전협의가 되어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
<p>제43조(전시장 관리)</p> <p>① 사용자는 전시장내의 시설, 설비, 비품 등의 손상, 파손 및 분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다.</p> <p>②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이나 전시 장치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오물과 폐기물의 반출의무와 책임을 가진다.</p> <p>③ 제2항의 오물 및 폐기물의 반출, 처리를 태만하거나 통보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서울산업진흥원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의 처리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/p>	<p>제43조(전시장 관리)</p> <p>① 사용자는 전시장내의 시설, 설비, 비품 등의 손상, 파손 및 분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다.</p> <p>②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이나 전시 장치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오물과 폐기물의 반출의무와 책임을 가진다.</p> <p>③ 제2항의 오물 및 폐기물의 반출, 처리를 태만하거나 통보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진흥원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의 처리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/p>
<p>제44조(원상복구)</p> <p>① 전시주최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전시장의 각종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집기비품 등의 상태를 서울산업진흥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, 변형, 망실 등 발생시 SETEC 전시장 원상복구 확인서(별지 제13호 서식)를 제출하고 원래의 상태와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시주최자가 서울산업진흥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원상복구치 아니하거나 전시주최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신속한 복구로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이 원상복구를 대행하기로 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은 실 소요경비의 15/100이내의 금액을 대행수수료로 추가하여 전시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청구에 따라 즉시 청구금액을 납부 또는 기 예치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</p>	<p>제44조(원상복구)</p> <p>① 전시주최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전시장의 각종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집기비품 등의 상태를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,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, 변형, 망실 등 발생한 경우, 전시장 원상복구 확인서(별지 제13호 서식)를 제출하고 원래의 상태와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전시주최자가 진흥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<b>원상복구하지</b> 아니하거나, 전시주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<b>가능하도록 진흥원이</b> 원상복구를 대행할 수 있다. 진흥원은 실 소요경비의 15/100이내의 금액을 대행수수료로 추가하여 전시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청구에 따라 즉시 청구금액을 납부 또는 기 예치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보세전시장 설명</p> <p>제45조(보세 전시장의 설명) 서울산업진흥원은 전시장을 임시 보세구역으로 설명하는데 협조하며, 임시 보세구역 설명에 따른 제반 행정수속은 전시주최자의 책임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보세전시장 설명</p> <p>제45조(보세 전시장의 설명) 진흥원은 전시장을 임시 보세구역으로 설명하는데 협조하며, 임시 보세구역 설명에 따른 제반 행정수속은 전시주최자의 책임으로 한다.</p>
<p>제46조(보세전시품의 관리책임)</p> <p>① 보세 전시품이 전시되는 경우 사용자는 보세품 관리를 위하여 세관원 및 서울산업진흥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② 보세전시품의 반출입 관련 제반 행정수속 및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</p>	<p>제46조(보세전시품의 관리책임)</p> <p>① 보세 전시품이 전시되는 경우 사용자는 보세품 관리를 위하여 세관원 및 진흥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② 보세전시품의 반출입 관련 제반 행정수속 및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절 운영위원회 구성</p> <p>제47조(운영위원회)</p> <p>① 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.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시장 관리.운영 관련 개선 및 발전사항</li> <li>2. 기타 전시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</li> </ol> <p>③ 운영위원회의 구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li> <li>2. 위원장은 서울산업진흥원 SETEC 관할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가.자치구 관계자, 전시관련 학계, 기관, 민간 전문가 중 SETEC 관할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</li> <li>3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절 운영위원회 구성</p> <p>제47조(운영위원회)</p> <p>① <b>진흥원은</b> 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.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<b>다음 각 호의</b>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시장 관리.운영 관련 개선 및 발전사항</li> <li>2. <b>전시회 배정에 관한 주요 사항</b></li> <li>3. 기타 전시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<b>인정하는 사항</b></li> </ol> <p>③ 운영위원회의 구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li> <li>2. 위원장은 <b>진흥원</b> SETEC 관할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구 관계자, <b>전시관련 학계, 기관, 민간 전문가 중 SETEC 관할 본부장이 위촉한다.</b>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/p>	<p>3.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<b>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 비수기 운영</p> <p>제48조(비수기 운영)  정부관련단체, 기관으로부터 인·허가를 득한 관련단체(중앙본부)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시·판매행사에 대해 전시장 비수기(1,2,7,8,12월)를 이용하여 전시장을 배정할 수 있다.  단, 상기 기간 중 기타의 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, 기배정된 행사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, 동일 기간내에 다수의 임대수요가 경합될 경우 제12조 배정기준에 의해 배정하고, 동시 배정이 가능할 경우 구획 배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 비수기 운영</p> <p>제48조(비수기 운영)  정부관련단체, 기관으로부터 인·허가를 득한 관련단체(중앙본부)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시·판매행사에 대해 전시장 비수기(1,2,7,8,12월)를 이용하여 전시장을 배정할 수 있다.  단, 상기 기간 중 기타의 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, 기 배정된 행사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, 동일 기간 내에 다수의 임대수요가 경합될 경우 제12조 배정기준에 의해 배정하고, 동시 배정이 가능할 경우 구획 배정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절 부설주차장 운영</p> <p>제49조(부설주차장 운영)  ① 전시장의 부설주차장은 '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'에 근거하여 운영한다.  ② 세부적인 사항은 'SETEC 부설 주차장 관리요령'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. (신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절 부대시설 운영</p> <p>제49조(부설주차장 운영)  ① 전시장의 부설주차장은 『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운영한다.  ② 세부적인 사항은 'SETEC 부설 주차장 관리요령'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.</p>
	<p>제50조(컨퍼런스룸 운영)  ① 전시장 내의 컨퍼런스룸은 전시장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  ② 세부적인 사항은 'SETEC 부설 컨퍼런스룸 사용요령'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.</p>
	<p>제51조(의무실 운영)  ① 사용자는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들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  ② 진흥원은 전시회 성격 및 관람객 수를 고려하여, 전시장 내에 의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의무실 설치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부 칙-</p> <p>1.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11월1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5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6년09월06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6년12월1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7년01월03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9년01월30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0년06월25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0년10월0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1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-1 경과조치 2005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  2-2 경과조치 2006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  2-3 경과조치 2007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  2-4 경과조치 2009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부 칙-</p> <p>1.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6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7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0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 <b>이 규정은 2018년 0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b></p> <p>2-1 경과조치 2005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  2-2 경과조치 2006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  2-3 경과조치 2007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  2-4 경과조치 2009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</p>

현행	
2-5 경과조치	2010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2-6 경과조치	2011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2-7 경과조치	2012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2-8 경과조치	2015년8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이 규정은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한다.(신설)	

개정안	
2-5 경과조치	2010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2-6 경과조치	2011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2-7 경과조치	2012년1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2-8 경과조치	2015년8월1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2-9 경과조치	2018년02월00일 이후 전시장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.
이 규정은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한다.	

[별표 제1호]

**SETEC 전시장 임대요율표**

(단위 : m<sup>2</sup>, 일, VAT별도)

구분		단위	임대요율	비고	
전시회, 이벤트	옥내	제1전시실 (3,130 s/m)	원/m <sup>2</sup> , 일	1,150	전시장 로비 사용료는 옥내 임대요율에 준함
		제2전시실 (1,684 s/m)			
		제3전시실 (3,134 s/m)			
옥외	제1전시실 (595s/m)	원/m <sup>2</sup> , 일	360		
	제2전시실 (770s/m)				
옥내·외 전시장 등차율	월별	6월	%	30(할인)	
		1, 7, 12월	%	20(할인)	
		2, 8, 9월	%	기본요금	
		3, 4, 5, 11월	%	20(할증)	
		10월	%	30(할증)	
	규모별	옥내전체 사용할 때	%	5(할인)	2회째 전시회부터 적용
		연 2회 이상 옥내 전체 사용시	%	5(할인)	
	전시실 분할사용	1실 미만	%	20(할증)	
	계약시기별	2년전 임대 계약시	%	5(할인)	
		행사기간 중 차년도 계약시	%	2(할인)	
시간외 사용료	1. 무료 사용시간은 SETEC 운영규정 제8조4항에 따라 설치 기간별, 실별 차등 지원 2. 전시장 기본사용시간(08:00-21:00)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/13를 가산함.				

주 1) 임대료(기본료) 산출방식 : 기본요율 × 임대차면적 × 임대차기간 × 1.1(부가가치세 포함)

주 2) 전시실 분할 사용시(옥외 전시장도 적용)  
- 사용면적이 1/2실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1/2실분 임대료 부과  
- 사용면적이 1/2실 이상, 1실 미만일 경우에는 1실분 임대료 부과  
-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

주 3) 시간외 사용 신청시 해당일 17:00까지 SETEC으로 신청, 승인 후 사용 가능

[별표 제1호]

**SETEC 전시장 임대요율표**

(단위 : m<sup>2</sup>, 일, VAT별도)

구분		단위	임대요율	비고		
전시회, 이벤트	옥내	제1전시실 (3,130 s/m)	원/m <sup>2</sup> , 일	1,150	전시장 로비 사용료는 옥내 임대요율에 준함	
		제2전시실 (1,684 s/m)				
		제3전시실 (3,134 s/m)				
전시장 등차율	월별	6월	%	30(할인)		전시장의 기본임대료와 시간외 사용료에 적용
		1, 7, 12월	%	20(할인)		
		2, 8, 9월	%	기본요금		
		3, 4, 5, 11월	%	20(할증)		
		10월	%	30(할증)		
	규모별	옥내전체 사용할 때	%	5(할인)	2회째 전시회부터 적용	
연 2회 이상 옥내 전체 사용시		%	5(할인)			
시간외 사용료	1. 무료 사용시간은 SETEC 운영규정 제8조4항에 따라 설치 기간별, 실별 차등 지원 2. 전시장 기본사용시간(08:00-21:00)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/13를 가산함.					

※ 옥외전시장의 경우, 관할구청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가능

주1) 임대료(기본료) 산출방식 : 기본요율 × 임대차면적 × 임대차기간 × 1.1(부가가치세 포함)

주2) 시간외 사용 신청시 해당일 17:00까지 SETEC으로 신청, 승인 후 사용 가능

## 현 행

[별표 제2호]

### SETEC 전시장 관리비 및 제사용료

#### 1. 기본관리비

구 분	단 위	요 율	비 고
기본관리비	m <sup>2</sup> ,일	250원	할인율, 할증료 등 적용전 금액

#### 2. 전기, 상하수도, 압축공기료

구 분	단 위	요 율	비 고
전기사용료	원/Kwh	138	7월, 8월은 요율 158 적용
상하수도료	원/m <sup>3</sup>	2,000	
압축공기료	기본장비사용료	원/개소	18,000
	압축공기사용료	원/분, m <sup>3</sup>	24

#### 3. 냉난방료

구 분	월 별	요율(원/m <sup>2</sup> /일)	비 고
냉난방료	1월	161	-1일7시간(10:00-17:00) 기준으로 추가시 시간당 계산  -1실미만 분할 사용할 때는 20% 할증율 적용
	2월	161	
	3월	138	
	4월	127(난방)/167(냉방)	
	5월	167	
	6월	167	
	7월	213	
	8월	213	
	9월	167	
	10월	127(난방)/167(냉방)	
	11월	149	
	12월	162	

주) • 전기료, 가스료 등 공공요금 변동시에는 전기료, 상하수도료, 압축공기료 및 난방료를 원가구성비율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전시회 특성에 따라 특약조항 들 수 있음.  
• 부가세 별도

## 개 정 안

[별표 제2호]

### SETEC 전시장 관리비 및 제사용료

#### 1. 기본관리비

구 분	단 위	요 율	비 고
기본관리비	m <sup>2</sup> ,일	250원	할인율, 할증료 등 적용전 금액

#### 2. 전기, 상하수도, 압축공기료

구 분	단 위	요 율	비 고
전기사용료	원/Kwh	138	7월, 8월은 요율 158 적용
상하수도료	원/m <sup>3</sup>	2,000	
압축공기료	기본장비사용료	원/개소	18,000
	압축공기사용료	원/분, m <sup>3</sup>	24

#### 3. 냉난방료

구 분	월 별	요율(원/m <sup>2</sup> /일)	비 고
냉난방료	1월	161	-1일7시간(10:00-17:00) 기준으로 추가시 시간당 계산
	2월	161	
	3월	138	
	4월	127(난방)/167(냉방)	
	5월	167	
	6월	167	
	7월	213	
	8월	213	
	9월	167	
	10월	127(난방)/167(냉방)	
	11월	149	
	12월	162	

주) • 전기료, 가스료 등 공공요금 변동시에는 전기료, 상하수도료, 압축공기료 및 난방료를 원가구성비율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전시회 특성에 따라 특약조항 들 수 있음.  
• 부가세 별도

현 행	개 정 안
<p>[별지 제1호 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SETEC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</b></p> <p>임대인(갑) : 서울산업진흥원 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(상암동)  임차인(을) :  주 소 :</p> <p>상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SETEC 임대차 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함)을 체결한다.</p> <p>제1조(임대차 목적물)  SETEC  옥내 : _____m<sup>2</sup>(제 전시설)  옥외 : _____m<sup>2</sup>(제 전시설) 계 _____m<sup>2</sup></p> <p>제2조(전시장 사용목적)  “을”은 제1조의 목적물을 _____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임대차 기간)  임대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월까지( 일)로 한다.</p> <p>제4조(임대차료)  기본임대차료 총액은 금 _____원정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임대차보증금 납부)  ① “을”은 이 계약체결 이전에 임대차료의 20%에 해당하는 금 _____원 정을 납부하고, 임대차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 _____원정을 20 년 월 일(임대차기간 개시일 6개월전)까지, 임대차료의 50%에 해당하는 금 _____원정을 20 년 월 일(임대차기간 개시일 7일전)까지 “갑”에게 현금으로 납입한다.  ② “을”이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임대차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“갑”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 ③ “을”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치 못할 경우 소정 금액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18%로 적용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.  ④ “갑”은 “을”의 전시장 사용 종료시 제1항의 임대차보증금을 전시장 임대차료로 대체정산한다.  ⑤ 상기 1항의 임대차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.</p> <p>제6조(사용시간)  ① 1일 전시장 사용시간은 08:00부터 21:00까지(13시간)로 한다.  ② “갑”은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초과시간에 대해 SETEC 운영규정 제8조 ④항에 의거 시간외 사용료를 설치 기간별, 사용면적별 무료 사용시간을 차등 적용한다.  ③ 단, 제2항에서 정한 초과시간 이외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초과시간당 1일 대료의 1/13에 해당하는 시간외 사용료를 징구한다. 다만 초과시간이 30분 이상</p>	<p>[별지 제1호 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SETEC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</b></p> <p>임대인 : (재)서울산업진흥원 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(상암동)  임차인 :  주 소 :</p> <p>상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SETEC 전시장 임대(차) 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함)을 체결한다.</p> <p>제1조(임대차 목적물)  SETEC  옥내 : _____ m<sup>2</sup> (전시설)</p> <p>제2조(전시장 사용목적)  “임차인”은 제1조의 목적물을 “ _____ ” 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임대차 기간)  임대차기간은 _____년 월 일( ) ~ _____년 월 일( )까지, 일간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임대차료)  ① 기본임대차료 총액은 금 _____ 원정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  ② “임대차 보증금”은 기본임대차료와 관리비 및 원상복구예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석한다.</p> <p>제5조(임대차보증금 납부)  ① “임차인”은 이 계약체결 이전에 총 임대차료의 20%(계약금)에 해당하는 금 _____원정, 총 임대차료의 30%(중도금)에 해당하는 금 _____원정을 _____년 월 일까지 계약체결 전에 납부하고, 총 임대차료의 50%(잔금)에 해당하는 금 _____원정을 _____년 월 일(임대차기간 개시일 7일전)까지 “임대인”에게 현금으로 납입한다.  ② “임차인”이 제①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임대차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“임대인”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 ③ “임차인”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임대차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, 지정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1일당 지체상금을 18%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</p>

## 현 행

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.

제7조(관리비 및 원상복구비 예치금)  
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전시장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 금 \_\_\_\_\_정(부가가치세 포함)을 20\_\_년 \_\_월 \_\_일(임대차기간 개시 7일전)까지 “갑”에게 예치하여야 한다.

② “갑”은 전시장 사용종료 시 제1항의 예치금을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로 대체 정산하며 정산 후 발생된 잔금은 정산종료와 동시에 “을”에게 환불한다.  
 ③ 제1항의 예치금은 무이자로 한다.

제8조(운영규정의 준수)  
 ① 계약기간 중 “을”은 “갑”의 SETEC 운영규정, 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 
 ② “을”이 제1항을 위반하여 “갑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운영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.

제9조(계약변경 및 위약금, 계약해지)  
 ① 전시장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사용자가 계약된 전시장의 일부( 50% 미만)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제16조 제5항, 제17조 제4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SETEC에 지불하여야 하며 기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이 있을 경우, 동 보증금에서 차감한다. 단, 위약금은 기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지 못한다.

취 소 시 기	위 약 금
임대차기간 개시일 부터 7일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100%
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7일전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 80%
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4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 70%
임대차기간 개시일 4개월 전일부터 5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 60%
임대차기간 개시일 5개월 전일부터 12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 50%

②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SETEC의 승인을 득하고 임대차료 총액의 5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  
 단, 기간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 당해 연도에 한한다.

③ 제②항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을 납입하는 즉시 “갑”과 수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“갑”은 “을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“을”이 제3자에게 이 계약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
 나. “을”이 계약된 전시장의 50%이상에 대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
 다. “을”이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, 관리비 및 원상복구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. 단, 자사 명의의 신용카드정보제공 및 사용동의서[별지 제19호 서식]와 신용카드 정보를 SETEC에 제출하여 미납금액과 지체상금을 납입 처리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다.

⑤ 천재지변, 재앙, 국가시책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기 납입임대차료 전액을 반환한다.

## 개 정 안

④ “임대인”은 “임차인”의 전시장 사용 종료 시 제①항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시장 임대차료로 대체 정산한다.  
 ⑤ 상기 ①항의 임대차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.

제6조(사용시간)  
 ① 1일 전시장 사용시간은 08:00부터 21:00까지(13시간)로 한다.  
 ② “임대인”은 “임차인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초과시간에 대해 SETEC 운영규정 제8조 ④항에 의거 시간외 사용료를 설치 기간별, 사용면적별 무료 사용시간을 차등 적용한다.  
 ③ 단, 제②항에서 정한 초과시간 이외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초과시간당 1일 임대료의 1/13에 해당하는 시간외 사용료를 징구한다. 다만 초과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.

제7조(관리비 및 원상복구비 예치금)  
 ①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의 전시장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한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 금 원(부가가치세 포함)을 년 월 일(임대차기간 개시 7일전)까지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.  
 ② “임대인”은 전시장 사용종료 시 제①항의 예치금을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로 대체 정산하며 정산 후 발생된 잔금은 정산종료와 동시에 “임차인”에게 환불한다.  
 ③ 제①항의 예치금은 무이자로 한다.

제8조(운영규정의 준수)  
 ① 계약기간 중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의 SETEC 운영규정, 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 
 ② “임차인”이 제①항을 위반하여 “임대인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운영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.

제9조(계약변경 및 위약금, 계약해지)  
 ① 전시장 임대차 계약 체결 후 “임차인”이 계약된 전시장의 일부(50% 미만)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변경,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“임차인”은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“임대인”에 지불하여야 하며 기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이 있을 경우, 동 보증금에서 차감한다. 단, 위약금은 기 납입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지 못한다.



**현 행**

⑥ 전시장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임대차료의 100%를 위약금으로 징구하며 계약자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임대차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0조(용어해석)

- ① 이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- ② 이 계약체결 시 시행중인 “갑”의 SETEC 운영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. 단, 상호 상치되는 경우는 본 계약조항이 우선한다.

제11조(분쟁해결)

- ① 이 계약에 관하여 “갑”, “을”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“갑”, “을”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 상기의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쌍방이 서명 날인 후,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. . . .

임대인(갑) : 서울산업진흥원  
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(상암동)  
대표이사 (인)

임차인(을) :  
주 소 : 계약자 (인)

**개 정 안**

취 소 시 기	위 약 금
임대차기간 개시일 부터 7일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100%
임대차기간 개시일 7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 80%
임대차기간 개시일 3개월 전일부터 4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 70%
임대차기간 개시일 4개월 전일부터 5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 60%
임대차기간 개시일 5개월 전일부터 12개월까지	취소면적/계약면적×임차료× 50%

- ② 임대차계약 체결 후 “임차인”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“임대인”의 승인을 득하고 임대차료 총액의 5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 단, 기간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 당해 연도에 한한다.
- ③ 제②항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을 납입하는 즉시 “임대인”과 수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“임대인”은 “임차인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가. “임차인”이 제3자에게 이 계약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
  - 나. “임차인”이 계약된 전시장의 50%이상에 대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
  - 다. “임차인”이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기본임대차료, 관리비 및 원상복구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
- ⑤ 전시장 사용 개시 후 “임차인”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임대차료의 100%를 위약금으로 징구하며 “임차인”은 잔여기간분에 대한 임대차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⑥ 천재지변, 재앙, 지자체의 정책 변경, 외부요인에 의한 전시장 운영 중단 등의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, “임대인”은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기 납입임대차료 전액을 반환하며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
제10조(용어해석)

- ① 이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.
- ② 이 계약체결시 시행중인 “임대인”의 “SETEC 운영규정”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. 단, 상호 상치되는 경우는 본 계약조항이 우선한다.

제11조(분쟁해결)

- ① 이 계약에 관하여 “임대인”, “임차인”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.
- ② 제1항의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“임대인”, “임차인”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현행

개정안

상기의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쌍방이 서명 날인 후, 각1통씩 보관한다.

20 . . . .

임대인 : 서울산업진흥원  
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(상암동)  
대표이사 (인)

임차인 :  
주소 : 계약자 (인)

[별지 제2호 서식]

전시시스템 설치(변경)신청서

- ▶ 행사명 : ▶ 행사기간 :
- ▶ 변경사유(변경시) : ▶ 행사전시장 :
- ▶ 공사업체 : (부스 : 전기: 파이텍스 : )

별첨과 같이 전시시스템을 설치(변경) 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▶ 신청인 주소 :  
회사명 : 대표자 : (인)  
담당자 : (인) (전화번호 : )

- \* 별첨 1) 전시시스템 배치평면도 5부
- 2) 전시시스템별 평면도 및 입면도 각1부

승인 여부 : 여 부  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전시시스템 설치(변경) 승인서

귀사의 전시시스템 설치(변경)신청을 승인함.

▶ 행사명 : ▶ 행사기간 :

[별지 제2호 서식]

전시시스템 설치(변경)신청서

		승인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승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승인
행사명		행사기간	
변경사유(변경시)		행사전시장	
공사업체	부스 : 전기 : 파이텍스 :		

별첨과 같이 전시시스템을 설치(변경) 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회사명	대표자	(인)
담당자	전화번호	
주소		

- \* 별첨 1) 전시시스템 배치평면도 5부
- 2) 전시시스템별 평면도 및 입면도 각1부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전시시스템 설치(변경) 승인서

귀사의 전시시스템 설치(변경)신청을 승인함.







현행

[별지 제6호 서식]

광고안내 시설물 설치(변경) 신청서

▶ 행사명 : ▶ 행사기간 :

▶ 변경사유(변경시) :

▶ 설치업체 : ▶ 설치일 : ▶ 철거일 :

SETEC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별첨과 같이 광고안내 시설물을 설치(변경) 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▶ 신청인 주소 :

회사명 : 대표자 : (인)
담당자 : (인) (연락처 : )

별첨. 광고안내 시설물 사양서 및 배치도 2부.
승인여부 : □ 여 □ 부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.....절.....취.....선.....

▶ 행사명 : 광고안내시설물 설치(변경) 승인서
▶ 행사기간 :

▶ 변경사유(변경시) :

▶ 설치업체 : ▶ 설치일 : ▶ 철거일 :

귀사의 광고안내시설물 설치(변경) 신청을 승인함.
200 년 월 일

서울산업진흥원

개정안

[별지 제6호 서식]

광고안내 시설물 설치(변경) 신청서

Table with 4 columns: 행사명, 변경사유(변경시), 설치업체, 행사기간. Includes checkboxes for approval status (승인여부).

SETEC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별첨과 같이 광고안내 시설물을 설치(변경) 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▶ 신청인

Table with 4 columns: 회사명, 담당자, 주소, 대표자. Includes a field for phone number (전화번호).

별첨. 광고안내 시설물 사양서 및 배치도 2부.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.....절.....취.....선.....

광고안내시설물 설치(변경) 승인서

Table with 4 columns: 행사명, 변경사유(변경시), 설치업체, 행사기간.

귀사의 광고안내시설물 설치(변경) 신청을 승인함.

20 년 월 일

서울산업진흥원

**현 행**

[별지 제7호 서식]

**중량물 반입신고서**

- ▶ 행사명 : ▶ 부스번호 :
- ▶ 반입업체명 : (연락처)
- ▶ 주최업체명 : (연락처)

중량물명	중량(톤)	수량	용도

별첨. 중량물 전시 및 장치위치 도면 1부.

SETEC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전시에 필요한 상기 중량물 반입을 신청하오니,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▶ 신청인 주소 :

회사명 : 대표자 : (인)  
 담당자 : (인) (연락처 : )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**개정안**

[별지 제7호 서식]

**중량물 반입신고서**

행사명	부스번호
반입업체명	연락처
주최업체명	연락처

중량물명	중량(톤)	수량	용도

별첨. 중량물 전시 및 장치위치 도면 1부.

SETEC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전시에 필요한 상기 중량물 반입을 신청하오니,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▶ 신청인

회사명	대표자
담당자	전화번호
주소	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











**현 행**

[별지 제13호 서식]

**SETEC 전시장 원상복구 확인서**

▶ 행사명 : ▶ 행사기간 :

▶ 사용전시장 :

일시	파손, 훼손 및 망실 내용	복구여부	원상복구비	비고

주) “란” 부족시 별지사용

SETEC 임대기간 동안 상기와 같이 파손, 훼손, 변형 및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원래와 같이 동등한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 년 월 일

▶ 확인자 회사명 :

주 소 :

성 명 : (인) (연락처 : )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**개 정 안**

[별지 제13호 서식]

**SETEC 전시장 원상복구 확인서**

행사명	행사기간
사용전시실	

일시	파손, 훼손 및 망실 내용	복구여부	원상복구비	비고

주) “란” 부족시 별지사용

SETEC 임대기간 동안 상기와 같이 파손, 훼손, 변형 및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원래와 같이 동등한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 년 월 일

▶ 확인자

회사명	대표자	(인)
담당자	전화번호	
주소		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## 현 행

[별지 제14호 서식]

### 컨퍼런스룸 사용신청서

접수번호			
사용목적			행사명
사용일시	년 월 일( : ~ : )	<input type="checkbox"/> 오전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후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일
	년 월 일( : ~ : )	<input type="checkbox"/> 오전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후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일
	년 월 일( : ~ : )	<input type="checkbox"/> 오전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후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일
	년 월 일( : ~ : )	<input type="checkbox"/> 오전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후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일
신청인	사업자번호	대표자명	
	주 소		
	업 태	업 종	
	담당자	직 위	
	전화번호	팩 스	
계약금	일금 원(W )	입금일자	
잔 금	일금 원(W )	입금일자	
SETEC 세미나실 임대요령 및 유의사항 이행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.			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			
신청업체명 : _____ 주 소 : _____ 대 표 자 : _____ (인)			
<b>유의 사항</b> 1. 사용료는 행사개최 2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 2. 행사를 일방으로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, 행사일 30일 이전에 통보시 계약금의 50%를 반환합니다. 3. 컨퍼런스룸 비품은 기존배치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하시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.			
서울산업진흥원 귀중			

## 개 정 안

[별지 제14호 서식]

### SETEC 컨퍼런스룸 사용 신청서(임대차 계약서)

임 차 인 (상호명/단체명)			사업자번호		
업 태			종 목		
주 소					
대표자	성 명		담당자	성명(직책)	
	전화번호			전화번호	
	FAX번호			FAX번호	
	휴대번호			휴대번호	
	E-mail			E-mail	
행 사 명					
주 최	(주관 : _____ )				
임 대 일	년 월 일 ( 요일)				
임대시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오전 (8시-12시)	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후 (13시-17시)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일 (8시-17시)
	<input type="checkbox"/> 야간 (18시-21시)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_____ )		
실제행사시간	: ~ :				
임대장소 /참석인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컨퍼런스룸(전시장2층, 100석) _____ 명				
장비임대	① 기본제공	②    ▪ 무선마이크 1개, 유선마이크 1개			
	선택 사항	프로젝터			
반입물	※ 반입물(장비, 상품, 설치물 등)이 있을 경우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				
추가사항					

임대료 (VAT포함)	회의실 사용료		장비 사용료		합계	
납입일정	계약금 (임대료의 50%)	년 월 일 (계약체결후 7일 이내)				
	잔 금 (임대료의 50%)	년 월 일 (사용개시 7일전)				
납입방법	1) 우리은행 1005-302-098994 예금주 : (재)서울산업진흥원					

- ※ 기본약정사항 및 이용요령
- 계약변경 및 위약금
    -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회의실의 사용장소 및 기간을 변경하거나 일부장소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,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      - 임차기간 변경시 : 해당 임대료의 20% 위약금(계약기간변경은 당해연도에 한함)
      - 임차장소의 (일부)사용취소 : 해당 임대료의 100% 위약금(임대개시일~7일까지), 70% 위약금(임대차 개시일 7일 이후~1개월), 50% 위약금(임대1개월이후~4개월), 30% 위약금(임대 4개월 이후~12개월)
    - 계약체결후 일방적 해약시 기납입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
  - 기간 및 장소 변경시 위약금
    - 임대료 납부연체시 지체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8%의 지체보상금을 부과한다.
    - 임대시간 외 회의실 추가사용시 시간당 전일 임대료의 1/9을 지불하여야 하며, 추가 장비임대 및 시간외 사용료는 행사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 완료한다.
  - 좌석배치
    - 회의실은 기본좌석형식으로 이용하며, 기본좌석이 외의 좌석배치시 SETE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장비이용
    - SETEC은 임차인에게 기본장비로 마이크 2개(무선 1개, 유선 1개)를 제공한다.
    - 기타장비(프로젝터 등) 사용 시 별도의 장비임대료 부과하며, 행사와 관련 별도의 장비반입 시에는 SETE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양도 및 행사내용 임의변경금지
    - 임대차 계약완료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,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.
  - 주차
    - 회의주차장용 무료주차 2대
    - 참석자는 SETEC 전시장 안내데스크에서 30%할인권 수령 가능
  - 식음료서비스
    - 행사장내 생수를 제외한 외부 식음료반입불가
  - 현수막, 유도사인, 포스터 등 설치
    - 사인물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, 거치대 및 사인보드 이외에 외벽 부착을 금지한다. (내·외벽 부착시 강제 철거)
  - 위험물 반입 금지 및 제한사항
    - 위험물(인화성, 난방기, 전열기, 화기, LPG용기 등)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한다.
    - SETEC내에서는 일체의 판매행위, 조리행위 및 각종 실험(화학, 화기 등)금지하며, 제품전시, 광고 시에는 SETE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폐기물 쓰레기 반출
    - 행사종료후 발생된 폐기물은 실외로 반출하여야 한다.
  - 원상복구
    - 행사종료 후 각종시설과 비품의 원상복구 조치 후 현장관리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한다.
    - 파손, 변형 등의 발생 시 원래의 상태 및 동등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
  - 기타
    - SETEC 규정 위반 시 임대인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임 차 인 (직인 혹은 인감서명)	임 대 인
SETEC 컨퍼런스룸 사용을 위해 상기 기본약정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SETEC 운영규정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회의실 임대를 신청합니다.  20 . . . . .  상 호 명 : 대 표 자 : (인)	SETEC 컨퍼런스룸 사용 기본약정사항과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회의실 사용을 승인합니다.  20 . . . . .  SETEC 서울산업진흥원 (인)

**현 행**

[별지 제15호 서식]

**SETEC 전시장 사용 신청서**

우 135-283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(대치동 514번지) 2층 전산산업탑  
Tel : (02)2187-4646 / Fax (02)2187-4620

구 분	세 부 내 역				
행 사 명	국 문 명				
	영문(약칭)				
	홈페이지	주최/주관	/		
사 용 기 간	임대기간	20 . . . ~ . . . ( 일간)			
	준비기간	20 . . . ~ . . . ( 일간)			
	행사기간	20 . . . ~ . . . ( 일간)			
	철거기간	20 . . . ~ . . . ( 일간)			
사 용 장 소	옥내 전시장	<input type="checkbox"/> 1전시실(3,130s/m) <input type="checkbox"/> 2전시실(1,684s/m) <input type="checkbox"/> 3전시실(3,134s/m) 합 계 : s/m			
	옥외 전시장	<input type="checkbox"/> 1전시장(595s/m) <input type="checkbox"/> 2전시장(770s/m)			
행사규모	참가국수	개국	참가업체수	국내( 개사), 해외( 개사)	
주 최 자	상호/단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		전 화	
	주 소			FAX	
	담 당 자	성명(직함):	( )	E-mail	
		휴대폰 :			

※ 별첨 : 행사기획서(개요서)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
(계약금 입금 이전에는 행사장소의 변동 및 해지 가능성 있습니다.)

상기와 같이 귀 센터의 전문전시장 사용을 신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해 SETEC 운영규정 및 이용요령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SETEC의 배정결과를 수용하며 SBA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SETEC 안내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.

20 . . . .

신청회사명 :  
대표자 : (인)  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**개 정 안**

[별지 제15호 서식]

**SETEC 전시장 사용 신청서**

우 135-283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(대치동) SETEC  
Tel : (02)2187-4646 / Fax (02)2187-4620

구 분	세 부 내 역			
행 사 명	국 문 명			
	영문(약칭)			
	홈페이지	주최/주관	/	
사 용 기 간	임대기간	20 . . . ( 요일) ~ 20 . . . ( 요일) ( 일간)		
	준비기간	20 . . . ( 요일) ~ 20 . . . ( 요일) ( 일간)		
	행사기간	20 . . . ( 요일) ~ 20 . . . ( 요일) ( 일간)		
	관람시간	: ~ : (24시간기준)		
사 용 장 소	전시장	<input type="checkbox"/> 1전시실(3,130s/m) <input type="checkbox"/> 로비(339s/m) <input type="checkbox"/> 2전시실(1,684s/m) <input type="checkbox"/> 3전시실(3,134s/m) 합 계 : s/m		
	참가국 수	개국	참가업체 수	국내( 개사), 해외( 개사)
계 약 자	상호/단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
	주 소			연락처
	대표자			FAX
	행사담당자 (직책포함)			전화
	회계담당자 (직책포함)			휴대폰
				E-mail
				전화
				E-mail

※ 별첨 : 행사기획서(개요서)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
(계약금 입금 이전에는 행사장소의 변동 및 해지 가능성 있습니다.)

상기와 같이 귀 진흥원 SETEC 전시장 사용을 신청하오니 임대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해 SETEC 운영규정 및 이용요령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의 배정결과를 수용하며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안내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.

20 . . . .

신청법인(기관명)		대표자	(인)
-----------	--	-----	-----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

## 현 행

[별지 제16호 서식]

### SETEC 전시장 사용동의서

#### □ 전시장 사용신청 및 계약절차

- 전화 또는 SETEC에 방문하여 사용가능한 날짜와 사용면적 등 상담
  - 문의처 : **Tel. 02) 2187-4646, Fax. 02) 2187-4620**
- 전시장 사용신청서 제출(팩스전송 가능)
  - 제출서류 : 전시장 사용 신청서, 전시계획서, 사업자등록증
- ※ 신청서 다운로드(www.setec.or.kr 접속 → 전시임대 → 전시장 임대관련 서식)
- 신청내용 검토, 전시일정 조율 등 전시장 임대관련 상호 협의
- 전시장 임대배정 및 계약체결 안내공문 발송
- 임대료 납입
  - 1) 계약금 입금
    - 계약체결 전 임대료의 **20% 납입** → 임대차 계약체결 → 임대차 중도금 **임대료의 30% 납입** (임대개시 6개월 전) → 전시회 홍보자료 및 전시장 이용관련 각종 작성양식 제출 (기술지원신청서, 도면, 작업신고서 등 임대개시 10일전)
  - 2)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입금
    - 임대개시일 7일전까지 잔금(임대료의 **50%**) 납입, 예치금(임대료의 **55%**) 입금

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
우리은행	1005-401-045539	(재)서울산업진흥원

- ※ 신청서에 기재한 상호명으로 입금 요망
- 3) 세금계산서 수령 : 행사종료 후 별도 송부 (직접전달 또는 우편송부)
- 개막식 관련 자료 제출(개장 3일전)
- 전시회 개최(보도자료 및 디렉토리 제출)
- 전시회 사용자 정산(행사 종료 후 전기사용료, 냉난방비 등 사용자 검침내용 정산내역에 반영)

#### ※ 주차할인 및 면제기준

- 1) 행사 주최자 차량 : 임대기간 중 무료
- 2) 발급기준 및 신청방법

사용장소	발급기준	신청방법
전시장	1개실당 8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최자용 무료주차권 발급 신청서(별지 제 12호 서식)를 작성 후 행사 종료시까지 현장지원실로 제출</li> </ul>

- 주) 버스 등 대형차량은 제외
- 3) VIP 차량 : 최대 15대(행사 당일 출차 1회에 한함)
- 4) 행사 준비/철거 차량 : 5시간 무료 (화물차, 9인승 이상 승합차량에 한함)
  - 승용차 50% 할인, 등록업체는 무료
  - 가. 모든 작업차량은 전시장 뒤편의 화물주차장을 이용해야 함.
  - 나. 입차 후 최초 5시간까지는 별도의 무료 확인이 필요 없으며, 5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
  - 다. 전시용 사전 등록차량은 무료
  - 라. 언론사 부차 차량, 택배, 택시, 소방차, 경찰차, 응급차 등의 차량은 무료
  - 마. 승용차 50% 할인
- 5) 참가업체 : 50% 할인(시간권)
  - ※ 전시장 안내데스크에서 참가업체 등록증 제시와 함께 주차할인권을 수령하여 사전무인정산기 이용차량에 한하여 할인
- 6) 기타
  - 국가유공자, 장애인 : 80% 할인
  - 경 차 : 50% 할인
  - 관람객 : 30% 할인
  - 전시회 관람목적으로 단체 관람객이 탑승한 버스 : 50% 할인(시간권)
  - **다동익카드 소지자 : 2인(30%), 3인(50%)**
  - **18시~익일08시 주차차량 : 50% 할인**
  - ※ 중복할인불가 : 주차요금 중복 감면사유 해당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

#### □ 전시장 사용자 주의사항

##### ○ 로비사용

- 안내 및 등록데스크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
- 부스 설치시 사전협의를 통해 이용 가능(별도 임대료 부과)

## 개정안

[별지 제16호 서식]

### SETEC 전시장 사용동의서

#### □ 전시장 사용신청 및 계약절차

- 전화 또는 SETEC에 방문하여 사용가능한 날짜와 사용 면적 등 상담
  - 문의처 : Tel. 02) 2187-4607, Fax. 02) 2187-4620
- 전시장 사용신청서 제출
  - 제출서류 : SETEC 전시장 사용신청서, 사용동의서, 사업 등록증, 행사기획서, 안전대책계획서 및 서약서 각 1부.
- ※ 신청서 다운로드(www.setec.or.kr 접속 → 전시임대 → 전시장 임대관련 서식)
- 신청내용 검토, 전시일정 조율 등 전시장 임대관련 상호 협의
- 전시장 임대배정 및 계약체결 안내공문 발송
- 임대료 납입
  - 1) 계약금 입금
    - 계약체결 전 임대료의 20% 납입 → 임대차 계약체결 → 임대차 중도금 임대료의 30% 납입 (임대개시 6개월 전) → 전시회 홍보자료 및 전시장 이용관련 각종 작성양식 제출 (기술지원신청서, 도면, 작업신고서 등 임대개시 10일전)
  - 2)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입금
    - 임대개시일 7일전까지 잔금(임대료의 50%) 납입, 예치금(임대료의 55%) 입금
- ※ 납부계좌 별도안내, 신청서에 기재한 상호명으로 입금 요망
- 3) 세금계산서 수령 : 행사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
  - ※ 임대차계약서 제9조 ⑥항에 의거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
- 개막식 관련 자료 제출(개장 3일전)
- 전시회 개최(보도자료 및 디렉토리 제출)
- 전시회 사용자 정산(행사 종료 후 전기사용료, 냉난방비 등 사용자 검침내용 정산내역에 반영)
- ※ 주차할인 및 면제기준
  - 1) 행사 주최자 차량 : 임대기간 중 무료
  - 2) 발급기준 및 신청방법

사용장소	발급기준	신청방법
전시장	1개실당 8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최자용 무료주차권 발급 신청서(별지 제 13호 서식)를 작성 후 행사 종료 시까지 현장지원실로 제출(차량번호등록)</li> </ul>

주) 버스 등 대형차량은 제외

- 3) VIP 차량 : VIP전액무료권 20장 제공 (출차 시 1회에 한함)
- 4) 행사 준비/철거 차량 : 5시간 무료 (화물차, 9인승 이상 승합차량에 한함)
  - 승용차 50% 할인, 등록업체는 무료
- 가. 모든 작업차량은 전시장 뒤편의 화물주차장을 이용해야 함.
- 나. 입차 후 최초 5시간까지는 별도의 무료 확인이 필요 없으며, 5시간 초과 시 정상요금 부과
- 다. 전시용 사전 등록차량은 무료
- 라. 언론사 부차 차량, 택배, 택시, 소방차, 경찰차, 응급차 등의 차량은 무료
- 마. 승용차 50% 할인
- 5) 참가업체 : 50% 할인(시간권)
- 6) 기타
  - 국가유공자, 장애인 : 80% 할인
  - 경 차 : 50% 할인
  - 관람객 : 30% 할인
  - 전시회 관람목적으로 단체 관람객이 탑승한 버스 : 50% 할인(시간권)

#### □ 전시장 사용자 주의사항

##### ○ 로비사용

- 안내 및 등록데스크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
- 부스 설치시 사전협의를 통해 이용 가능 (별도 임대료 부과)
- 현수막 설치·철거
  - SETEC 지정협력업체 이용 (외부업체 이용시 부착물 강제 철거)
  - 정해진 규격 외 부착 불가, 지정장소 외 부착 불가(위반시 강제철거)
  - 내부 천정배너 설치 시 빔 골조 외 전선, 배관 등에 부착불가
  - 행사종료 후 당일 즉시 철거
- 공사업체 이용
  - 전시장내 공사 관련 업체는 반드시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시공
  - 부스, 전기, 카페트, 현수막, 인터넷, 급배수, 가스, 가구비품, 중장비 등
  - 지정분야 외 공사 필요시 홀매니저와 협의

**현 행**

- **현수막 설치·철거**
  - SETEC 지정협력업체 이용 (외부업체 이용시 부착물 강제 철거)
  - 정해진 규격 외 부착 불가, 지정장소 외 부착 불가 (위반시 강제철거)
  - 내부 천정배너 설치 시 빔 골조 외 전선, 배관 등에 부착불가
  - 행사종료 후 당일 즉시 철거
- **공사업체 이용**
  - 전시장내 공사 관련 업체는 반드시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시공
  - 부스, 전기, 카페트, 현수막, 인터넷, 케이터링, 급배수, 가스, 가구바품, 중장비 등
  - 지정분야 외 공사 필요시 홀매니저와 협의
- **보안요원 배치 및 폐기를 처리**
  - 전시회 준비에서 철거까지 전시보안 영역 인력을 배치
  - 준비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(수시 안전순찰)
  - 전시장내 주차통제, 차량 출입통로 확보, 비상문 개방 등 시설 운용에 협조
  - 행사장 시건 및 봉인, 조명 점·소등 관리
  - 주최자가 임차기간내 발생시킨 폐기물에 대하여는 주최자가 SETEC 지정협력업체 또는 주최자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주 최자 비용으로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.
- **방염**
  - 목재부스, 무대, 파티션, 암막 등 방염대상물은 반드시 방염 처리하여야 함
  - 방염처리 확인서 및 접수증을 홀매니저에 제출
  - 미 방염 자체 사용 적발시 공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
- **각종 신청·신고서 제출**
  - 입차일 7일전까지 전시장 배치도면, 기술지원체크리스트, 기술지원신청서, 주최자용 무료주차발급신청서방화관리 책임자신청서를 홀 매니저에 제출
- **위험물 반입 금지**
  - 위험물 (인화성물질, 난방기, 전열기, 화기 등) 사용 및 반입금지
  - ※ 단, 전시성격상 위험물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전시장 위험물 반입허가신청서를 7일전에 홀 매니저에게 제출하여 승인 (허가)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함
- **점검통로 및 소방점검구 확보**
  - 전시실 내부 소화전 전면부 개방(부스 설치시 자바라 설치)
  - 물탱크실, 화장실, 기계실, 분전반 등 점검통로 확보
- **판매시설**
  - 식음료 판매 부스 운영 금지
  - 조리용 LPG용기, 가정용 부탄가스 반입금지 (별도 가스시설 시공)
  - 숯불 사용시 사전승인을 요하며, 소화 및 배기시설 설치 후 사용가능
- **무대설치**
  - 무대 설치용 마루판 및 배경(백그라운드) 방염 시공
  - 암막 사용시 암막 방염 시공
  - 무대 및 조명 트러스 설치시 바닥 보양후 설치
  - 음향은 주변 주택가 및 타 부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데시벨 유지
  - 특히 야외부대 설치시 주변 민원 사전 방지
- **독립부스 시공**
  -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지정협력업체 이용
  - 자체시공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
  - 독립부스 시공 관련 외부 업체 이용시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한 감리확인서 제출
- **전화신청**
  - 주최자가 직접 영동전화국(국번 없이 100번)에 신청
  - 전화기는 사용자가 직접 임대하여 준비
- **기타안내 및 제한사항**
  - 전시장 바닥에 양면테이프, 비닐테이프 등 사용 금지 (원상복구처리)
  - 바닥 및 벽면에 천공, 못질 등 금지
  - 사전협의 없이 이벤트 진행, 구조물 설치, 시설사용 등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
- **원상복구**
  - 행사종료 후 시설파손 등 홀매니저와 함께 확인하여야 함
  - 시설물의 파손, 훼손·오손 발생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전시장에서 이를 대행시 실소요경비 외에 15% 이내의 대행수수료 추가 청구
  - ※ 위 내용 외 모든 사항은 SETEC 운영규정에 의거 적용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개정안**

- **보안요원 배치**
  - 전시회 준비에서 철거까지 전시보안 영역 인력을 배치
  - 준비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(수시 안전순찰)
  - 전시장내 주차통제, 차량 출입통로 확보, 비상문 개방 등 시설 운용에 협조
  - 행사장 시건 및 봉인, 조명 점·소등 관리
- **방염**
  - 목재부스, 무대, 파티션, 암막 등 방염대상물은 반드시 방염 처리하여야 함
  - 방염처리 확인서 및 접수증을 홀매니저에 제출
  - 미 방염 자체 사용 적발시 공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
- **각종 신청·신고서 제출**
  - 입차일 7일전까지 전시장 배치도면, 기술지원체크리스트, 기술지원신청서, 주최자용 무료주차발급신청서방화관리 책임자신청서를 홀 매니저에 제출
- **위험물 반입 금지**
  - 위험물 (인화성물질, 난방기, 전열기, 화기 등) 사용 및 반입 금지
  - ※ 단, 전시성격상 위험물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전시장 위험물 반입허가신청서를 7일전에 홀 매니저에게 제출하여 승인(허가)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함
- **판매시설**
  - 식음료 판매 부스 운영 금지
  - 조리용 LPG용기, 가정용 부탄가스 반입금지 (별도 가스시설 시공)
  - 화기(전기난 가) 사용 시 사전승인을 요하며, 소화 및 배기시설 설치 후 사용가능
- **점검통로 및 소방점검구 확보**
  - 전시실 내부 소화전 전면부 개방(부스 설치시 자바라 설치)
  - 물탱크실, 화장실, 기계실, 분전반 등 점검통로 확보
- **무대설치**
  - 무대 설치용 마루판 및 배경(백그라운드) 방염 시공
  - 암막 사용시 암막 방염 시공
  - 무대 및 조명 트러스 설치시 바닥 보양후 설치
  - 음향은 주변 주택가 및 타 부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데시벨 유지
  - 독립부스 시공
    -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지정협력업체 이용
    - 자체시공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
    - 독립부스 시공 관련 외부 업체 이용시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한 감리확인서 제출
  - 전화신청
    - 주최자가 직접 영동전화국(국번 없이 100번)에 신청
    - 전화기는 사용자가 직접 임대하여 준비
  - 기타안내 및 제한사항
    - 전시장 바닥에 양면테이프, 비닐테이프 등 사용 금지(원상복구처리)
    - 바닥 및 벽면에 천공, 못질 등 금지
    - 사전협의 없이 이벤트 진행, 구조물 설치, 시설사용 등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
  - 원상복구
    - 행사종료 후 시설파손 등 홀매니저와 함께 확인하여야 함
    - 시설물의 파손, 훼손·오손 발생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전시장에서 이를 대행시 실소요경비 외에 15% 이내의 대행수수료 추가 청구
    - ※ 위 내용 외 모든 사항은 SETEC 운영규정에 의거 적용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※ 관리비 사후정산 시 결과보고서 제출 必

※ 위 내용 외 모든 사항은 SETEC 운영규정에 의거 적용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관리비 사후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 必

본인은 SETEC 전시장 사용을 위해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SETEC 운영규정 및 이용요령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법인(기관명)	대표자	(인)
-----------	-----	-----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본인은 SETEC 전시장 사용을 위해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SETEC 운영규정 및 이용요령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업체(기관) 명 : 담당자 : (인)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**현 행**

[별지 제17호 서식]

**신용카드정보제공 및 사용동의서**

1. SETEC 시설이용 고객은 본 동의서를 확인함과 동시에 본 동의서에 명시된 총 비용에 대하여 사용자의 법인신용카드(이하 법인카드)정보를 오픈하여 SETEC에서 본 동의서에 의해 사용자의 법인카드와 신용정보를 활용 미납금액을 결재처리 하는데 동의합니다.

○ 결재 허용금액 : 一金 원(W )

○ 신용카드 정보

구 분	기재사항
신용카드사 명	
신용카드 기재 영문명	
카드번호	
유효기간(Month/Year)	

2. 고객께서는 SETEC 전시장 임대차보증금, 정산금액, 원상복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, SETEC은 비용납입 지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 동의서 및 카드오픈 결재방법을 활용하여 미납금액을 법인카드로 납입처리 하는데 동의합니다.

○ 임대보증금 납부기한

구 분	납 입 시 기	납 부 비 율
계약금	계약 체결시	임차료의 20%
중도금	사용개시 6개월전	임차료의 30%
잔금+관리비에치금	사용개시 7일전	임차료의 50%, 관리비에치금 100%

3. 사용자의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SETEC 납부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사용자는 법인카드의 한도를 임대료 결재처리 가능토록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에 법인카드 임시한도상향조치(법인카드 한도처리 요청 공문 송부)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SETEC에 본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.

4. 사용자는 SETEC 운영규정 및 임대료 납입절차를 준수하고 본 동의서에 의한 결재처리가 불가한 경우 SETEC은 전시장 사용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그로 인한 법적, 물적 손실 부담은 해당사에 있음을 동의합니다.

※ 제출자료 : 법인카드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카드 임시한도상향조치 서류

20 . . .

회사명 : (사업자등록번호 : )  
 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  
 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**개 정 안**

[별지 제17호 서식]

**신용카드정보제공 및 사용동의서**

1. SETEC 시설이용 고객은 본 동의서를 확인함과 동시에 본 동의서에 명시된 총 비용에 대하여 사용자의 법인신용카드(이하 법인카드)정보를 오픈하여 SETEC에서 본 동의서에 의해 사용자의 법인카드와 신용정보를 활용 미납금액을 결재처리 하는데 동의합니다.

○ 결재 허용금액 : 一金 원(W )

○ 신용카드 정보

구 분	기재사항
신용카드사 명	
신용카드 기재 영문명	
카드번호	
유효기간(Month/Year)	

2. 고객께서는 SETEC 전시장 임대차보증금, 정산금액, 원상복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, SETEC은 비용납입 지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 동의서 및 카드오픈 결재방법을 활용하여 미납금액을 법인카드로 납입처리 하는데 동의합니다.

○ 임대보증금 납부기한

구 분	납 입 시 기	납 부 비 율
계약금	계약 체결시	임차료의 20%
중도금	사용개시 6개월전	임차료의 30%
잔금+관리비에치금	사용개시 7일전	임차료의 50%, 관리비에치금 100%

3. 사용자의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SETEC 납부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, 사용자는 법인카드의 한도를 임대료 결재처리 가능토록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에 법인카드 임시한도상향조치(법인카드 한도처리 요청 공문 송부)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SETEC에 본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.

4. 사용자는 SETEC 운영규정 및 임대료 납입절차를 준수하고 본 동의서에 의한 결재처리가 불가한 경우 SETEC은 전시장 사용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그로 인한 법적, 물적 손실 부담은 해당사에 있음을 동의합니다.

※ 제출자료 : 법인카드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카드 임시한도상향조치 서류

20 . . .

신청법인(기관명)		대표자	(인)
-----------	--	-----	-----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



■ 전시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구분	점검사항	점검여부
설치부스 안전점검	1. 소화전 앞 기물 방치 및 부스 설치를 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2.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는 자바라 설치, 전시품 적재제한 등의 안전조치 예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3. 독립부스의 복층구조 부스 설치를 제한함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4. 전시장 내 화기 반입을 금지함 (개인화기, 직접화기(벽난로, 모닥불, 숯불 등)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비상출입 구 확보	1. 행사 진행시 비상출입구를 전면 개방함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2. 비상출입구별 안전(운영)요원을 배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3. 비상출입구 및 화물게이트 앞에 기물을 방치 하지 않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4. 화물게이트 출입구 주차금지 및 안전(운영)요원을 배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관람객 안전확보	1. 각 전시실별 최대 수용인원 초과시 관별 입장제한 계획이 있음 (제 1, 3 전시실 최대 수용인원 각 1,000명, 제 2전시실 최대수용인원 500명)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	2. 관별 입구 안전요원 배치 운영을 하며, 관람객 인원체크 실시할 예정임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본인은 SETEC에서 개최하는 00000(전시회명)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 
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법인(기관명)		대표자	(인)
-----------	--	-----	-----

서울산업진흥원 귀중